

地自體 環境行政에 바란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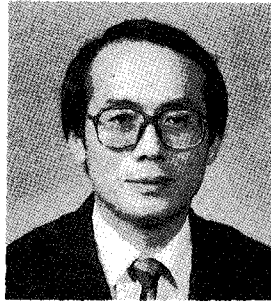
—무허가 배출시설의 개념조정이 필요하다—

1. 개요

기업체의 환경지도 단속에
서 적발건수의 상당수가
무허가 배출시설에 대한 적발이다.
무허가에는 공장 전체가 무허가
이거나 기허가된 공장에서 일부
변경 또는 증설된 시설에 대해 변
경허가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무허가로 되어 있는 경우의 두가
지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는 관련타법(건축
법, 국토이용관리법... 등)에 저촉
되어 허가불능지역에 공장이 위치
하고 있거나 기업주(또는 관련자)
의 부지에서 아직 허가를 받지않
은 시설을 가동하는 경우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으며, 후자는 공장
설립시와는 달리 법이 개정되어
알고는 있으나 허가 및 신고가 불
가능한 경우 또는 기업체의 생산
부서에서 시설을 임의 변경하여
미처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경
우 등에 해당되며 때로는 법의 수
행 또는 적용에 있어, 유권해석의
견해차이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
다.

환경법상 무허가 배출시설의 적



張 竣 榮
(본 연합회 회장)

발시 규제조치는 그 시설에 대한 사
용금지 또는 폐쇄(대기환경보전법
제21조, 수질환경보전법 제21조,
소음·진동규제법 제19조)를 명하
도록 되어 있고, 벌칙은 가장 강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
하의 벌금형에 해당된다. 그리고
오염물질 배출이 되는 경우는 배출
부과금을 부담토록 되어 있어 적어
도 무허가 배출시설에 대한 법적
규제는 어느사안 보다도 강력한
규제가 이루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업체의 환경오염방지는 허가
업무가 최선은 아니며 단지 배출
시설 허가는 사전오염방지 수단으

로서 그역할을 다하는것인데 환경
인·허가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오염물질의 저감이라고 한다면 기
업체의 입장에서 볼때 목적보다는
수단을 더 중시하지 않는것인가
하는 여론도 없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악법의 소지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혹자는 기업에는 오염
물질 배출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하
게 부각시키는 대신 배출시설 허가
제는 장기적으로 폐지토록 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허가제 폐지 등
의 주장보다는 무허가 배출시설의
개념조정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차기 법제정에서 고려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우선 지도단속시 적
용측면에서라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몇가지 사안을 나열해
보고자 한다.

2. 문제되는 사안들과 고려할 점

지도 단속시 가장 적발하기 쉬운
건이 무허가 배출시설이다. 이는
기술적보다도 기존허가증과 비교
만 하면 누구든 쉽게 적발할 수 있
다. 또한 어느 기업체이든 엄밀히

따지면 무허가 배출시설은 한두개라도 적발될 수 있다. 가령 어떤기업체의 기허가된 배출시설이 1,000개 인데 이중 한 두개 단위 시설의 전동기(모터)나 일부분의 규격이 현장사정에 따라 환경담당자도 모르게 오전에 변경되어 오후에 적발되는 경우가 있다. 또 부분적 변동이 있었지만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기존 방지시설에 유입(기준용량은 충분)되어 아무 이상없이 처리되고 있으나 미처 변경허가나 신고를 하지못해 적발되었을 경우도 있다. 대기기업의 경우 하루에도 몇건씩 현장의 급격한 사정에 의해 환경담당자도 모르게 시설이 부분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며 급히 주문된 수출물량을 맞추기 위해 공정이 급조 변경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물론 변경된 배출시설이 당장 오염물질을 발생하여 무단방류되거나 처리에 장애를주어 오염유발의 원인이 된다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는데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오염유발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벌칙에 적용되어 과다한 벌금이 부과되고 당해시설의 조업정지 또는 폐쇄의 적용을 받게 된다면 때로는 기업체가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수가 있으며 환경행정관청을 불신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매일 국소적인 변경이 있는 어떤 대기기업에서 무허가 배

**차제에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방지시설 설치
허가로 전환해 보는것도
고려해 봄직하다.
왜냐하면 어떠한
배출시설이 설치되느냐
보다는 여기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어떻게
저감시키고 어떠한 방지
시설로서 효율성이
제고되어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하느냐에 그 중요성이
더하기 때문이다.**

출시설의 적발만은 없이하자는 목적하에 인력을 투입하여(물론 인력도 어렵겠지만) 매일 한 두 건씩 변경사항이 발생시 마다 즉시 허가 또는 변경 신고 서류를 허가관청에 접수시킨다면 과연 관청에서 이를 수용할 수 있겠는가? 아마 관청에서도 몇명이 계속 이회사 허가업무에만 매달려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허가된 해당공정에서 부분적으로 변경 또는 개조되었을 경우에는 오염 유발의 원인이 되지 않고 또 기존처리 시설로 유입되어 완벽하게 처리되고 있는한 단순한 법의 단속위주보다는 지도나

경고측면에서 유도해야 하고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도록 한다음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벌칙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필요하다.

환경법상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필은 행정처분기준이 조업정지나 폐쇄가 아니라 2차까지 경고처분이라는 것도 언급해 두고자 한다.

3. 결론

무허가 배출시설의 개념 조정은 물론 법적 조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환경인·허가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환경보전에 있다면 법적 한계를 논하기 이전에 목적을 중시하는 지도단속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하지만 행여 적발이 손쉬운 무허가 단속건수로 적발건수를 올린다는 오해가 없도록 우선 앞서 언급한 사안들에 대한 고려가 있었으면 한다.

기업의 환경보전이 오염물질의 저감, 배출허용기준 유지를 그 수단으로 한다면 어떠한 배출시설 설치의 사전허가는 무의미한 행정인지도 모른다. 오히려 차제에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방지시설 설치 허가로 전환해 보는것도 고려해 봄직하다. 왜냐하면 어떠한 배출시설이 설치되느냐 보다는 여기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어떻게 저감시키고 어떠한 방지 시설로서 효율성이 제고되어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하느냐에 그 중요성이 더하기 때문이다. ◀

'발언대'는 건강한 소리를 담고 싶습니다. 언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있는 '발언대'에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편집자>